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7. 3 선고 2023가단1242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 
담당변호사 궁재원, 김영재

피 고 B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 
변 론 종 결 2024. 6. 5.  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## 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/2 지분에 관하여 2023. 8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/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3. 8. 31. 접수 제8245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10. 26. C에게 193,000,000원을 변제기 2022. 1. 31., 이자 연 5%, 지연이자 연 10%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 무렵 위 대여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원고 채권'이라고 한다)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마쳤다.

나. C이 이 사건 원고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2. 5. 26.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2023. 9. 26.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24,644,674원을 배당받아 C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으로 102,734,770원이 있다.

다. 한편, C은 2023. 8. 29.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중 C 지분 1/2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고 한다)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2023. 8. 3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C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【인정 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,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

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원고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원고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통해 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나아가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는 한편,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선순위

근저당권부 채무와 가압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 
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피고와 C이 부부관계에  
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 
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
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 
지분 1/2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**3. 결론**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효정

[별지]

## 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 아파트[도로명주소]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층 738.46㎡

2층 내지 15층 719.74㎡

지하층 715.38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대 32846.4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1층  호 철근콘크리트조 110.357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32846.4분의 57.447. 끝.

